

의안번호	2205633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4. 12. 23.
추계번호	24B514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농어촌관광사업장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3,000만원, 2030년 4억 5,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억원(연평균 4억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안 제13조 제4항 신설) - 우수등급 사업장 재정지원	430	430	440	450	450	2,200	440

주: 1. 본 추계 결과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동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의 합산 금액으로 향후 분담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15 신설(민박단지의 지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이 밀집되어 있을 것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3조제4항 신설(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1조의15 신설(민박단지의 지정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에 경관 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되나, 민박단지 지정 수, 단지당 지원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13조제4항 신설(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
 - (규모기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규모 제한 없음
 -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 (시설기준) 소방안전 시설 등 설치 의무(「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 (신고요건) 농어촌지역 주민(전입신고 필수)으로, 신고자가 단독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 거주 의무(「농어촌정비법」 제86조)
 - * 주민이 아닌 법인·단체 등은 농어촌민박사업 불가
 - (농어촌민박 현황) 2024년 11월 기준,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은 총 34,508개소
 - * [참고자료 1] 시·도별 농어촌민박 현황 참고

[표 2] 농어촌민박 현황

(2024년 11월 기준, 단위: 개소)

	영업중	폐업·휴업	소계
전국 농어촌민박 수	34,508	14,530	49,038

주: 자료 출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www.localdata.go.kr)이며, 농촌민박과 어촌민박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지역(부산, 울산 등)은 '어촌' 요건에 따라 신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장을 현행 주택에서 빈집까지 확대하면서,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 [참고자료 2]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체계 참고

[표 3]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비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개정안 (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정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u>주민이 소유</u> <u>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u> 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 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 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u>주민이 거주</u> <u>하고 있는 주택</u>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u>빈집</u> (이하 “빈집”이라 함)을 이용 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 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 으로 투숙객에게 <u>숙식</u>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 하는 사업

자료: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우수등급 사업장 재정지원(안 제 13조제4항 신설)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관광사업,¹⁾ 즉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

※단,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 결정

- 본 추계는 우수등급 농어촌관광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 추계기간 동안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는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에 우수등급 선정률을 곱하여 추계

—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 추계기간 동안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는 2023년 기준 347개소를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2019~2023년) 1.4% 적용

※ 연평균 증가율 1.4%: ('19년) 326개소 → ('23년) 347개소

— (우수등급 사업장 선정률) 2023년 기준 우수등급 사업장 선정률은 11.8% 수준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선정률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안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게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표 4] 연도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평가 신청 및 선정 현황: 2019~2023년

(단위: 개소)

	농어촌관광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	농촌체험·휴양마을	311	333	193	288	329
	관광농원	5	1	—	5	1
	농어촌민박	10	15	14	17	17
	소계(A)	326	349	207	310	347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	농촌체험·휴양마을	4	16	5	23	32
	관광농원	—	—	—	2	—
	농어촌민박	1	—	5	4	9
	소계(B)	5	16	10	29	41
선정률(C=B/A)		1.5%	4.6%	4.8%	9.4%	1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 동안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 및 우수등급 사업장 수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및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 전망: 2023~2030년

(단위: 개소)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A)	347	352	357	362	367	372	377	382
우수등급 사업장 선정률(B)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 (C=A×B)	41	42	42	43	43	44	45	45

주: 1. 등급평가 신청 사업장 수는 2023년 기준 347개소를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19~'23년) 1.4% 적용

2. 우수등급 사업장 선정률은 11.8%로 가정(2023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업장 1개소당 지원금액) 1개소당 10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²⁾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원금액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우수어촌체험휴양마을 시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농어촌관광사업장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억원으로 추계됨

[표 6] 우수등급 선정 농어촌관광사업장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우수등급 선정 사업장 수 (A, 개소)	43	43	44	45	45	—
1개 사업장 당 지원금액 (B, 백만원/개소)	10	10	10	10	10	—
지원금액 (C=A×B, 백만원)	430	430	440	450	450	2,200

주: 1. 본 추계 결과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동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의 합산 금액으로 향후 분담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별 농어촌민박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시·도별 농어촌민박 현황: 2024년 11월 기준>

(단위: 개소)

시·도별 영업상태별	농어촌민박		
	영업중(A)	폐업·휴업(B)	소계(C=A+B)
서울	—	—	—
부산	140	46	186
대구	48	20	68
인천	1,332	382	1,714
광주	6	2	8
대전	32	4	36
울산	291	105	396
세종	24	6	30
경기	3,718	1,648	5,366
강원	6,460	2,701	9,161
충북	1,545	593	2,138
충남	2,118	686	2,804
전북	1,277	735	2,012
전남	3,401	1,398	4,799
경북	3,904	1,464	5,368
경남	4,164	2,042	6,206
제주	6,048	2,698	8,746
합계	34,508	14,530	49,038

주: 자료 출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www.localdata.go.kr)이며, 농촌민박과 어촌민박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지역(부산, 울산 등)은 ‘어촌’ 요건에 따라 신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구성체계 >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준농어촌, 농어촌주택, 농어촌민박사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동일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1조의4(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금지)
	제11조의5(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11조의7(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11조의8(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11조의9(보험 등 가입 의무)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승계)
	제11조의11(지도·감독 등)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장의3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과 민박단지 지정 등
	제11조의14(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제11조의15(민박단지의 지정 등)
	제11조의16(지정 해제)

<신설>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동일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8조	동일
제19조(인증의 취소)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동일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신설>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제25조의3(청문)
	제25조의4(수수료)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별칙	제7장 별칙
제27조(별칙)	제27조(별칙)
<신설>	제27조의2(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